

9월세무일지



2007 봉급생활자와 세금

이번호부터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「생활세금시리즈」책자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세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글 쓰는 순서는 ①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, ②사업자와 세금신고, ③봉급생활자와 세금, ④주택과 세금, ⑤부동산과 세금, ⑥유익한 세금정보, ⑦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순으로 연재합니다.

1.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

☞ 근로소득세 원천징수

-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.
-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,
-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☞ 근로소득세 계산

계산절차

연간급여액
(-)비과세소득
총급여액
(-)근로소득공제
근로소득금액
(-)각종 소득공제
과세표준
(×)세율
산출세액
(-)세액공제
결정세액
(-)기납부세액
납부(환급)할 세액

근로소득공제

총급여액	공제금액
500만원 이하	전액
500만원 초과 ~1,500만원 이하	500만원+500만원 초과금액의 50%
1,500만원 초과 ~3,000만원 이하	1,000만원+1,500만원 초과금액의 15%
3,000만원 초과 ~4,500만원 이하	1,225만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0%
4,500만원 초과	1,375만원+4,500만원
(-)세액공제	초과금액의 5%
일용근로자	1인당 8만원

9월세무일지

☞ 각종 소득공제

■ 특별공제

구분	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
보험료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 전액 •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•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
의료비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 본인 : 전액 • 기본공제대상 :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 비중 500만원 한도(경로우대자, 장애인의 의료비는 추가 공제)
교육비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학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: 1인당 200만원 한도 • 대학생 : 1인당 700만원 한도 • 장애인특수교육비 : 전액 • 근로자 본인 : 전액(대학원 포함)
결혼·이사·장례비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급여액의 2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각 사유당 연 100만원 한도 • 당해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•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
주택자금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 40% 상당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(1,000만원 한도)

■ 인적공제

구분	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
기본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본인포함) : 1인당 10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계존속(본인, 배우자) : 60세 이상(여 55세) - 자녀·형제자매 : 20세 이하, 60세 이상(여 55세)
추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양육비 : 1인당 100만원(6세 이하 영유아) • 부녀자공제 : 1인당 50만원 · 장애인 : 1인당 200만원 • 경로우대 : 1인당 100만원(70세이상 150만원)
다자녀추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일 때 : 50만원 •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초과할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만원 +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
연금보험료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: 전액

기타 소득공제

구분	공제조건 및 공제한도액 연간 급여액
연금 저축 소득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0. 12. 31 이전 가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연금저축 부입액의 40%(연 72만원 한도) • 2001. 1. 1 이후 가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(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연300만원 한도)
신용카드사용 소득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 12월 ~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%(500만원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카드 · 직불카드 · 기명식선불카드의 사용금액 - 학원비 지로 납부금액 -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

2. 의료비 공제제도

🌿 의료비 공제

- 전년 12월 ~ 당해연도 11월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(연말정산)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.
- 그러나,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.

$$\text{소득금액} = \text{총수입금액} - \text{필요경비}$$

※ 다만, 근로자 소득, 경로우대자(65세이상),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.

- 의료비를 신용카드 · 직불카드 · 선불카드 ·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 의료비 공제 해당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.

🌿 의료비 공제절차

-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의료기관(약국)이 발행한 영수증
 -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
 - 장애인,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: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

9월세무일지
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: 장애인등록증(장애인 수첩)사본
- 기타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(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)
 - ※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
🌸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

▷ 일반적인 경우

$$\text{의료비총액} - (\text{총급여액} \times 3\%) = \text{공제대상의료비}$$

▷ 공제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$$\text{① 한도초과금액} = \text{의료비총액} - (\text{총급여액} \times 3\%) - 500\text{만원}$$

② 본인, 장애인,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

$$\text{①과② 중 적은 금액} + 500\text{만원} = \text{공제대상 의료비}$$

🌸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

▷ 공제대상 의료비

-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
-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
- 장애인 보장구 ·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
- 시력보정용 안경 · 콘택트렌즈(50만원 한도) • 건강검진료
-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 해당자가 추가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.
-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
3. 교육비 공제제도

🌸 국내 교육비 공제

-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(연말정산)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.
-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· 직계 비속 ·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,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.
 - 교육기관에는 초 · 중 · 고 · 대학 및 전문대학 · 방송통신대학 · 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·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,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.
 - 보충수업비, 학교버스이용료, 교육자재대, 책값은 기타 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 - 소득세 ·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.
 - ※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공제 한도액

본인	직계비속등	
전액 (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)	영유아·유치원생·취학전 아동	1인당 200만원
	초·중·고생	1인당 200만원
	대학생	1인당 700만원
	장애인 특수교육비	전액

🌻 국외 교육비 공제

○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·수업료,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.

- 국외근로자인 경우
 -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
- 국내근무자인 경우
 -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
 -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

○ 소득세·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.

▷ 공제 한도액

- 국내 교육비와 같음

▷ 제출서류

-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공납금 영수증
-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

🌻 교육비 공제절차

○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교육비 납입영수증
- 교육인적자원부,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 내역서
-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